

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4년 12월 22일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22일

3. 제안이유

-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
 -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
 - 양곡관리법령에 따라 등록업무 수행이 가능

5. 검토의견

· 본 개정조례안은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,

양곡가공업 등록이 양곡관리법령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양곡가공업 허가 절차에 관한 본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6. 참 부

· 충청북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